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

2005년 8월 일

갑: ㈜ 아토

을: ㈜ 유스 정보

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

㈜아토 (이하 "갑"이라 칭한다)과 ㈜유스정보 (이하 "을"이라 칭한다)는 다음과 같이 "방화 벽소프트웨어 유지보수"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이 계약은 "갑"이 설치,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) "유지보수"라 함은 유지보수 목적물의 정상가동을 위한 예방보수, 긴급보수,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위 일체를 말한다.
- 2) "방화벽소프트웨어"이라 함은 [첨부#1]의 어울림 SecureWorks를 말하며,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발생시 어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상호 협력하여 시스템 가동에 최대한 협력한다.

제 3 조 (목적물)

- 1) 유지보수 할 목적물은 [첨부 #1]과 동일하다.
- 2) 목적물의 설치장소 변경은 "을"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설치장소를 변경 또는 이동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유지보수료)

- 1) 이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료는 [첨부 #1]에서 정한 보수료로 정한다.
- 2) "을"은 제 1)항의 유지보수료를 "갑"에게 매월 청구하며 그에 관한 비용을 "을"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"을"이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계약기간)

- 1)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5년 08월 1일부터 2006년 01월 31일까지로 한다.
- 2) "갑"과 "을"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상호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6 조 (유지보수 의무)

1) "을"은 "갑"이 목적물을 최적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보 상)

- 1)"을"은 제 6조의 정기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"갑"에게 해당월분 유지 보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- 2) "을"은 "갑"의 수시보수 요청을 받고 평일은 4시간이내, 공.휴일은 6시간 이내에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.
- 3) "을"의 유지 보수 접수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, 공.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.
- 4) "갑"이 유지 보수 접수시간외에 문제 발생시는 "을"이 제공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도착시간은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책임의 제한)

다음 각 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"을"은 "갑"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"을"이 책임지지 않는다.

- 1) "갑"이 "을"에 대하여 이 계약서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
- 2)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
- 3) 국가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
- 4) "을"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경우
- 5) "갑"의 시스템 운용자 및 그 외 사람에 의한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

제 9 조 (시스템의 이전설치)

계약 기간 중 시스템을 이전 설치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 지원하도록 한때?

제 10 조 (부대설비에 의한 하자)

"갑"이 다른 부대장비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상으로 "을"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"을"은 시스템의 성능 또는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"갑"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로 인한 성능저하 및 "을"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부대장비로 인한 장비의고장은 책임지지 않는다.

제 11 조 (부분품 확보)

"을"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은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유지보수 확인서)

"을"은 "갑"의 전자계산조직에 대한 유지보수시 유지보수일, 유지보수내용 및 유지보수 담당자 성명 등을 기재한 유지보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, "갑"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"갑"에게 교부하고 1부는 "을"이 보관한다.

제 13 조 (기밀의 유지)

"을"은 이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된 "갑"의 업무상의 기밀 및 조합 관련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계약의 중도해지)

"을"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"갑"은 "을"에 대한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) 제 3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강제집행, 경매처분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은 때
- 3) "갑"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"을"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5 조 (법원의 관할)

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 및 기타 법적절차의 관할 법원은 "갑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.

제 16 조 (특약사항)

- 1)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"갑"과 "을"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2)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죠



제 17 조 (계 약 서)

- 1) "갑"과 "을"간의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 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- 2)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.

2005년 8월 일

"갑"

133-81-27249 (주) 아 토 문 생명 경기 사용 정왕 사화공단 1263-제 조 반도체장비 "을"

사율특별시 지초구 양제동 4-12 주식회사 유스정보 대표이사 유 영

유지보수 목적물

모 델	사 양 설 명		수량
SecureWorks2.0	-V3 warp engine update		
	-Major Version Upgrade 별도산정		1
	-Minor Version Upgrade		
	-On Line 서비스(서비스 시간대)		
	- 6 개월 2 회 정기 방문		
		\ * 3	2009
			A A SHEET
	110714.7743.115.77	005 000 5	
	년유지보수료(부가세포함)	935,000 원	